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5389
----------	-------

제안연월일 : 2025. 12.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 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2201974)	2024.7.18.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7.) 상정/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8.) 상정/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9.) 상정/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25.12.4.) 상정/축조심사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5.12.10.)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 폐기)
	김상욱의원 (2205203)	2024.11.4.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11.28.)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7.) 상정/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8.) 상정/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2.19.) 상정/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25.12.4.) 상정/축조심사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5.12.10.) 상정/축조심사/의결 (대안반영 폐기)
양부남의원 (2208101)	2025.2.12.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5.7.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25.12.4.) 상정/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 제1소위(25.12.9.) 상정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5.12.10.) 상정/축조심사/의결 (대안반영 폐기)
정부 (2213627)	2025.10.17.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체회의 (25.11.2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25.12.4.) 상정/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 제1소위(25.12.9.) 상정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5.12.10.) 상정/축조심사/의결 (대안반영 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 위원회 (25.12.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 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 원회(2025.12.10.)는
위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2.16.)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통계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세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규정(안 제34조 제1항제10호 사목 신설)

「지방세법」에서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폐기물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규정함.

나.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안 제42조제2항)

- 1)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전에는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인 경우에만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 2)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지방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지방세 등을 체납한 기간의 비율에 비례하는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안 제83조제1항)

-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하도록 하되, 과세전적부심사
-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

라. 지방세 과세정보 누설 시 과태료 부과(안 제108조의2 신설)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함.

마.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 공개 및 효과적인 활용 방안(안 제86조 및
제149조)

행정안전부내 지방세통계센터 설치 및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 구축
을 통해 지방세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0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 라목의 폐기물 매립시설을 의미한다)에 매립하는 때

제42조제2항 중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인(「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본다)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
2. 피상속인이 지방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

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로서 상속인(「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은 제외한다)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text{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A \times \frac{B}{C}$$

A: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B: 피상속인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까지의 기간 중 지방세를 체납한 일수

C: 피상속인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

제83조제1항 본문 중 “15일”을 “20일(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거나,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로 한다.

제86조제1항제5호 중 “제135조제2항 각 호, 제150조제2항”을 “제135조제2항 각 호, 제149조제8항, 제15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5조제1항 본문 중 “20일간”을 “20일간(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으로 한다.

제10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2(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6조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9조의 제목 “통계의 작성 및 공개”를 “통계의 작성 및 공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인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149조제3항 중 “공개”를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방세정보를 분석·공개 및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내에 지방세통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방세통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지방세정보를 분석·공개 및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목적의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지방세법의 제정법률안·개정법률안 및 국정감사, 그 밖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국회 예산정책처장이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세법의 제정법률안·개정법률안에 대한 세수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지방세의 부과·징수·감면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직접적인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⑨ 제7항에 따라 제공되거나 송부된 통계자료(제3항에 따라 공개된 것은 제외한다)를 알게 된 자는 그 통계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 9. (생 략) 10. 지역자원시설세 가. ~ 바. (생 략) <u><신 설></u>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 ----- -----. 1. ~ 9. (현행과 같음) 10. ----- 가. ~ 바. (현행과 같음) <u>사.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u> (「지방세법」 제142조 제2항 제2호 라목의 폐기물 매립시설을 의미한다)에 매립하는 때 <u>사. (생 략)</u> 11. · 12. (생 략) ② · ③ (생 략)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u>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u>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상속세 및 종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u>

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 설>

<신 설>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인(「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본다)이 -----.

1.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

2. 피상속인이 지방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로서 상속인(「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은 제외한다)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frac{\text{상속받은}}{\text{재산으로 보는}} = A \times \frac{B}{C}$$

A: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B: 피상속인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p>날부터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까지의 기간 중 지방세를 체납한 일 수</p> <p>C: 피상속인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p>
③ (생 략)	<p>③ (현행과 같음)</p> <p>제83조(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 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u>15일</u>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p>
② ~ ⑥ (생 략)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86조(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p>

제95조(보정요구) ①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증명할 자료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신 설>

템의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8조의2(비밀유지 의무 위반
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제86조제1항에 따
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
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형
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
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

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9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관련 자료를 분석·가공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방 세 운용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9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

----- . 이 경우 통계자료
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
적인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
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되
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방세정보를 분석·공개
및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
부 내에 지방세통계센터를 설

치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지방세통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지방세정보를 분석·공개 및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

<신 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목적의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지방세법의 제정법률안·개정법률안 및 국정감사, 그 밖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세법의 제정법률안·개정법률안에 대한 세수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계자료의 내용과 공개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6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도 불구하고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가 의결로 지방세의
부과·징수·감면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
서 과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의 개인
정보를 직접적인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
공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라 제공되거나
송부된 통계자료(제3항에 따
라 공개된 것은 제외한다)를
알게 된 자는 그 통계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
는 아니 된다.

⑩ ----- 제9항-----

-----.